

스웨덴,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급여 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 비교

김 대 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 개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제도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확정급여방식 공적연금제도는 인구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합이 시장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매우 안정된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¹⁾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정급여방식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연금재정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경제학적 변화요인을 급여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급여의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를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1998년

체계적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과 비스마르크식의 고급여 소득비례연금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 및 일본이 있다. 또한 미국 등에서도 자국의 소득비례연금에 이러한 형태의 재정안정화 방식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여 자동조정장치가 최근에 각광받는 정책적 배경에는 기여율 인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기존의 방안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수급자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기여수준을 인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근로세대의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더 이상의 기여율 인상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장기

1) 확정급여방식(DB) 연금제도는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에 상관없이 급여산식에 의해 확정되어 있고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소득증가율이 하락하거나)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재정 불안정을 겪는다. 반면 확정기여방식(DC)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기금운용수익률, 즉 시장이자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방식에서 중요한 인구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합이 확정기여방식에서 중요한 재정갭대가 되는 시장이자율보다 크다면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확정급여방식(DB) 공적연금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기여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²⁾ 아래에서는 급여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과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스웨덴

스웨덴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구 연금제도가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과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 체계를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개편하였다. 전체 보험료율은 18.5%인데, 이중 16%는 당해연도 명목확정기여 연금급여 지출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개인적립계정(premium reserve account)에 불입되어 민간의 연금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재정과는 별도로 정부의 일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최저 연금제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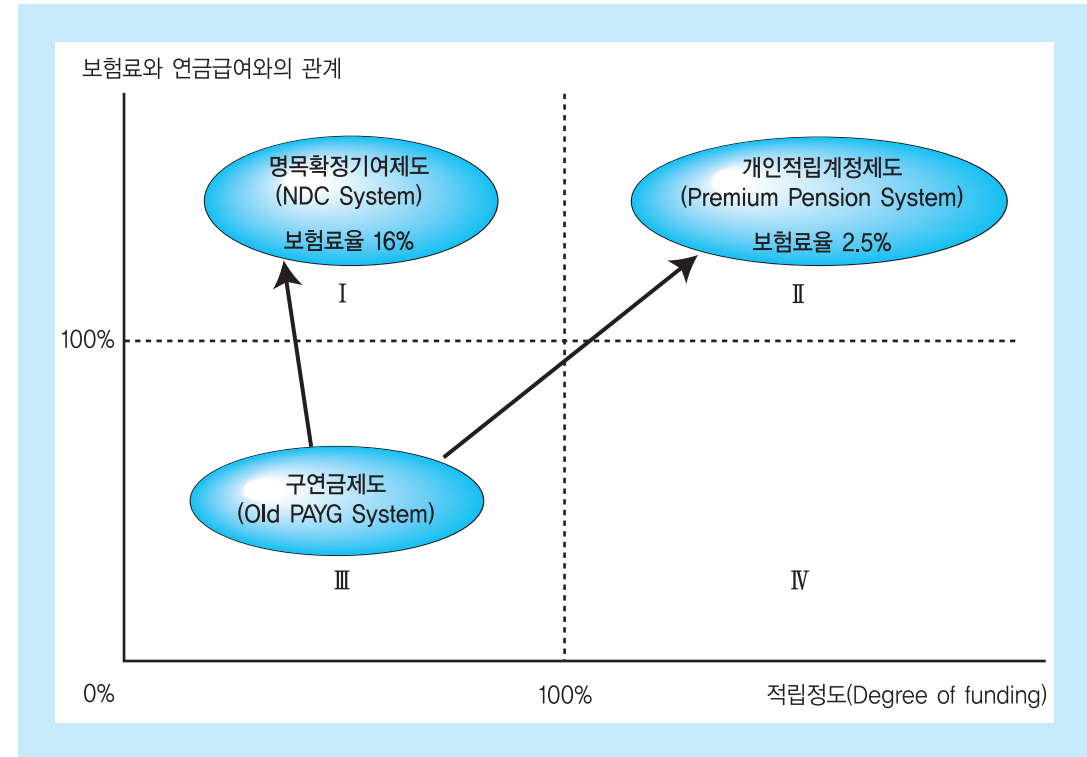
스웨덴 구 연금제도는 [그림 1]의 III영역에 해당되는 부과방식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었으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불안정과 큰

로기간 중 최고소득 15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여의 불공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 및 연금급여와 연계가 가능한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여의 불공평성 문제를 완화하였고 기대수명 연장과 경제상황을 반영한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특징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실제적립금이 쌓여 그 수익률만큼 급여로 지급되는 전통적인 확정기여방식(II 영역)과 다르게 보험료와 급여의 연계는 존재하지만 적립금이 거의 없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결정된 이자율이 아닌 실질 임금상승률에 의해 매년 연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명목확정기여방식에서 연금액은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notional pension capital)을³⁾ 연금계수(annuity divisor)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서 연금계수는 인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계수로 자신이 속한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자신이 속한 연령집단의 평균기대수명이 증가한다면 이 계수값이 증가하여 후세대가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의 증가율은 평균임금증가

2) 대체로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의 심리적 한계선은 20%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부과방식연금의 한계기여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본은 장래 필요보험료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독일은 2030년을 기준으로 22%로 설정하고 있다.
3) 이렇게 가상계좌로 적립된 금액은 나중에 연금급여로 사용되는 완충기금(buffer fund)으로 이전된다.

그림 1. 4개의 공적연금유형과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 방향⁴⁾



자료: Ole Settergren, "The Automatic Balance Mechanism of the Swedish Pension System", August 2001.

율에서 제도가 정한 이자율 1.6%를 차감함으로써 정해진다. 종합하면 명목확정기여방식에서의 연금액은 연금계수를 통해 평균수명 연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하고 소득지수

증가율(income index growth rate)을 통해 경제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text{○ 연금액(Pension benefits)} = \text{가상계좌적립금(Notional Pension capital)} \div \text{연금계수}$$

4) 4가지 선택영역에 대해 부연설명하면, 황축의 적립정도(Degree of funding)는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액 대비 가입자의 보험료로 쌓아놓은 적립금 비율로, 적립정도가 100% 미만인 경우는 재정운영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100% 이상인 경우 적립방식(funded)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축인 보험료와 연금급여와의 관계는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와의 연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는 내는 보험료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DC) 연금제도에 가깝고 100% 미만인 경우는 내는 보험료와 연금급여와의 관계가 다소 느슨한 확정급여방식(DB) 연금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가 다소 느슨한 확정급여방식이면서 재정운영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므로 스웨덴의 구연금제도와 동일한 III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annuity divisor)

○가상계좌적립금증가율(Pension value growth rate) = 소득지수실질증가율(income index growth rate) - 1.6%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growth rate)

그러나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은 부과 방식을 기본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평균 임금상승률을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이율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불확실한 재정불안정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채의 증가속도가 제도의 내부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웨덴은 자동안정화 지수를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자동안정화 지수는 다음과 같은 안정화비율(Balance ratio)을 정의하면서 시작된다.

$$\text{안정화비율(Balance ratio)} = \frac{\text{매년도총연금자산}}{\text{매년도총연금부채}}$$

단, 연금자산=보험료수입(contribution assets)+완충기금(buffer fund)
 =당해연도보험료수입×회전기간(tumover duration)+완충기금
 연금부채=현재까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한 연금부채(PL_w)+현재 수급자에 대한 연금부채(PL_r)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는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스웨덴은 회전기간(tumover duration)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2001년 스웨덴사회보험위원회에서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회전기간은 가입자의 평균연령과 수급자의 평균연령의 차이로, 대략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회전기간을 통해 보험료수입자산을 계산함으로써 매년도총연금자산과 매년도총연금부채의 비율인 안정화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도출된 안정화비율이 1보다 크면 향후 회전기간 동안의 연금자산이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부채보다 크므로 재정수지가 안정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안정화비율이 1보다 작으면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켜 명목적 연금자산은 새로운 연동장치, 즉 안정화 지수(balance index)에 의해 연동받게 된다. 안정화 지수는 평균임금상승률에 안정화비율(balance ratio)을 곱한 값이므로 안정화비율이 1을 넘지 못해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다

면 연금급여는 평균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 연동되므로 자동적으로 급여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추세와 평균수명증가의 인구통계

학적 변화는 각각 근로인구감소로 인해 보험료수입의 감소와 연금부채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안정화비율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동적으로 급여의 인하조정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렇게 안정화비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은 보험료를 고정한 채 소득의 재평가나 연금의 조정을 인구경제학

Social Services Highlight

적 변화와 연동시키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3. 독일

120년 전 전세계 사회보장제도의 모델이 된 공적연금제도를 고안한 독일은 완전적립방식 소득비례연금으로 시작하였으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적립금이 고갈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과방식 연금제도로 변경되었다. 1972년 연금개혁을 통해 45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의 약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정도로 매우 관대한 연금급여를 지급하였고 기존 65세에 연금수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63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언제든지 보험계리상의 삭감 없이 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과 저소득 실업자의 경우에는 60~65세 사이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1층인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어 1992년부터 크고 작은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였다.⁵⁾ 1992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급여연동을 기존 총소득 기준에서 순수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63

세부터 연금수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1992년 연금개혁은 독일 공적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는데 너무 미약하였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01년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⁶⁾ 2001년 연금개혁은 순수한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비록 작은 비중이지만 개인적립제도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장려하면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한 세기를 바라보는 연금개혁(reform for a century)으로 주목받았던 2001년 연금개혁은 예상치 못한 독일경제의 침체와 적립금 부족으로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연금재정에 위기가 발발하면서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02년 가을 사회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위원회(Rurup Commission)를 구성하여 2004년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2004년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연동방식에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를 포함시키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1층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방식과 유사한(Quasi-NDC) 제도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료가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한계선인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까지 20% 이상, 2030년까지 22% 이상

5) 2003년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은 이미 총소득의 19.5%에 도달하였고 현재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정할 경우 인구고령화 추세가 가장 정점을 이루는 2035년에 보험료율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6) 2001년 연금개혁은 당시 개혁을 추진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Riester 개혁"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1. 2001년 독일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조치	내용	총
최저보증연금 도입	노인들을 위한 소득조사 최저보증연금(minimum social security guarantee for old age)	0
새로운 급여산식 적용	급여수준을 약 10% 삭감	1
장애연금 폐지	근로능력에도 적용되는 장애연금 폐지	
유족연금 개선과 분할 연금 도입	유족연금이 적용되는 소득기준 개선, 분할연금 도입	
기업연금 개혁	투자제한 완화, 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	2
임의적 적립방식 개인연금 도입	개인퇴직계좌 도입, 정부보조와 세금감면제도 도입	1

자료: Borsch-Supan and Wilke, "Reforming the German Public Pension System", 2006. 6.

올리지 않지만, 급여수준은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지속가능성 계수를 포함시켜 종전의 70%에서 2030년에 64%로 6%pt 인하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4년 연금개혁위원회는 2001년 연금개혁에서 사용된 급여연동공식에 아래와 같이 제도부양비(dependency ratio)를 반영한 지속가능성 계수를 첨가하였다.

$$\text{지속가능성 계수} = (1 - \frac{PQ_{t-2}}{PQ_{t-3}})a + 1$$

단, PQ = 제도부양비 = $\frac{\text{연금수급자의 수}}{\text{가입자 및 실업자의 수}}$

a = 인구구조의 변화를 급여에 반영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계수

지속가능성 계수는 가입자 및 실업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로 산정되는 제도부양비를 포함함으로써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근로계층의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계수 중 a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급여에 반영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계수로 2004년 연금개혁에서는 1/4로 결정되었다. Junichi Sakamoto(2005)는 a=1일 경우 지속가능성 계수를 1-수급자의 증가율-가입자 및 실업자의 감소율로 재정의 했다.⁷⁾ 결국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근로세대가 감소한다면 지속가능성 계수는 감소하게 되고 노동시장과 경제여건이 좋아져 근로세대가 증가한다면 지속가능성 계수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설정된 지속가능성 계수로 인해 연금급여가 인구경제학적 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다.

2004년 연금개혁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포함시킴으로써 2001년 개혁 당시 목표로 세웠던 보험료율 아래로 기여수준을 유지하면서

7) 연금수급자의 증가율을 b, 가입자 및 실업자의 감소율을 c라 가정하면 지속가능성 계수=(1-(1+b)/(1-c))a+1=(1-(1+b+c))a+1=1-a(b+c)가 되므로 a=1이 되면 지속가능성 계수는 1-(b+c)가 된다.

〈 2004년 독일 연금개혁에 의한 급여산식 〉

$$PV_t = PV_{t-1} \frac{AGI_{t-2} (1 - \delta_{t-2} - \tau_{t-2})}{AGI_{t-2} (1 - \delta_{t-2} - \tau_{t-2})} \times \text{지속가능성 계수}$$

단, PV = 연금가치, AGI = 총소득(gross income)

δ = 보충개인연금에 대한 가상적인 보험료율

τ = 독일공적연금 보험료율

자료: Borsch-Supan and Wilke, "Reforming the German Public Pension System", 2006. 6.

적절한 노후보장을 위한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계수 중 a 값 변화에 따른 보험료율과 연금수준을 추계하였다. 위원회가 정한 a가 1/4일 경우 보험료율은 2030년에 23% 아래에서 유지되면서 급여수준은 총소득의 약 37%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다(Borsch-Supan and Wilke, 2006).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스웨덴과 독일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자인 Peter Diamond(2004)는 개인적립계정(fully funded individual accounts)을 포함시키려는 부시행정부의 개혁안에 맞서 현재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기대여명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삭감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장하였다.⁸⁾ 또한 2001~2004년까지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책임자를 맡았던 James C. Capretta(2006)도 Brooking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정책보고서(Policy Brief 151호)에서 스웨덴과 독일에서 적용한 유사한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의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부과방식 사회보장제도는 2042년에 고갈될 것이고 현재의 사회보장

8) 그는 American Economic Review(2004) 논문에서 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장점으로 적절한 노후소득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점, 일시불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 사회 빈곤계층, 특히 유족이나 가정주부를 위해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급여구조, 노인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연령 이하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세울로는 미래의 연금급여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는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James C. Capretta는 새로운 노인부양비 계수가 급여산식에 적용되는 독일 유형의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명시적인 급여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조치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현재의 재정추계가 잘못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이런 추계결과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미래변화를 반영하는 자정능력(self-correcting)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장점은 재정추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모두에게 정책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연금급여를 명시적으로 삭감하는 개혁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있는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부담이 덜 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 두 나라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적합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및 독일 공적연금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급여간의 연계가 매우 밀접한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확정급여방식

이고 자신의 소득과 상관없이 급여를 받는 세대내 재분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웨덴 공적연금제도보다 보험료와 급여간 연계가 밀접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확정급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연금인 관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부분적립방식인 관계로 스웨덴과 독일과 같이 부과방식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과방식 요소를 지닌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소득재분배 요소를 보유한 동시에 기존 확정급여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완전하게 제도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기존 틀 내에서 새로운 자동조정계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롭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동조정계수로 독일의 지속가능성 계수와 비슷한 제도부양비조정계수(dependency ratio adjustment index)가 있다. 스웨덴의 회전기간과 같은 특수한 개념을 사용하여 연금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수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잠재적 부채(implicit debt)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제도부양비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⁹⁾ 마지막으로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이런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중 하나는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이 너무 높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 더 이상

Social Services Highlight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재정안정성을 달성하려는 시도 때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9% 보험료율이 선진국처럼 높은 보험료율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적절한 보험료율에 대한 합

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앞두고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전망과 재정계산제도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SST](#)

9) 제도부양비율은 변동성(volatility)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변화율을 반영하기 보다는 10년 평균(ten-year moving average)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